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요령(제9조 관련)

1. 지정대상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물 운송의 대상 및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차량

2.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절차

가. 검역물 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의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의 설비조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 2)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사본
- 3) 보세운송업 신고서 사본
- 4) 납세완납증명서
- 5) 검역물 운송 중 제반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기 위한 연재산세(토지세, 건축세) 납부실적이 1인 이상의 합계가 14만원 이상 되는 재정보증서(공중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 6) 기타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관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요건 및 검역물 운송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검역물 운송에 적합할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물 운송차량은 지정구간 및 대상에 한하며,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검역물 관리 및 운송

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인에 대하여 검역물의 감시상 필요한 차량 표시와 검역물 안전관리 및 가축방역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검역물 운송차량의 운송요율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운임요금을 적용한다.